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안종열

I. 개관

1. 의의

-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통화, 유가증권 등은 유통과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이므로, 이에 관한 신용과 거래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위조죄의 위법성이 가중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함. 통화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외국의 통화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의 일종이나 단순한 증명문서에 그치지 않고 통화에 가까운 기능을 수행하므로 별도로 규정. 유가증권의 유통성이 통화에 비하여 적어 통화에 관한 죄보다는 가볍게 형벌을 규정함
- 인지와 우표 등은 유가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증권 자체가 특정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가증권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규정
- 한편, 대표적인 유가증권의 하나인 수표의 부정발행이나 그 위조·변조 등 수표에 관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부정수표단속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의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음

2. 보호법의

- ▣ 통화에 관한 범죄 : ‘통화거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 ▣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 : ‘유가증권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18장)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07	①	통화(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무기 또는 2년 ↑ 유기징역 (유기징역시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②, ③	외국통화(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②항) 또는 외국에서(③항)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1년 ↑ 징역(②항) 10년 ↓ 징역(③항)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④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 (행사, 수입, 수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8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 취득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	5년 ↓ 징역 (또는 1,500만 원 ↓ 벌금) (징역시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 210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 지정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 또는 외국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행사	2년 ↓ 징역 (또는 500만 원 ↓ 벌금)
§ 211	①항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했을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되는 통화유사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 3년 ↓ 징역 (또는 700만 원 ↓ 벌금)
	②항	통화유사물판매	
§ 212	(207조, 208조, 211조 각 죄명) 미수	207조, 208조, 211조의 각 미수	
§ 213	(207조 ①내지③항 각 죄명) (예비, 음모)	207조 ①항 내지 ③항의 예비, 음모	5년 ↓ 징역 (다만 자수시 필요적 감면)

나. 유가증권에 관한 죄(형법 제19장)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14	유가증권(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①항),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②항)	10년 ↓ 징역
§ 21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 216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 작성 또는 유가증권에 허위사항 기재	7년 ↓ 징역 (또는 3,000만 원 ↓ 벌금)
§ 217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214조 내지 216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10년 ↓ 징역
§ 218	①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위조 또는 변조	10년 ↓ 징역
	②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행사, 수입, 수출)	전항의 인지 등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 219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인지 등을 취득	3년 ↓ 징역 (또는 1,000만 원 ↓ 벌금)
§ 221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인지 등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	1년 ↓ 징역 (또는 300만 원 ↓ 벌금)
§ 222	①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할 목적으로 인지 등과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	2년 ↓ 징역 (또는 500만 원 ↓ 벌금)
	②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 유사물판매	전항 기재 인지 등 유사물 판매	
§ 223	(214조 내지 219조, 222조 각 죄명) 미수	214조 내지 219조, 222조의 미수범	
§ 224	(214조, 215조, 218조①항 각 죄명) (예비, 음모)	214조, 215조, 218조①항의 예비, 음모	2년 ↓ 징역

다. 부정수표단속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	①항	다음 각 호의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1호 - 가공인물 명의 발행/작성 2호 - 수표계약없이 발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 3호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	5년 ↓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 벌금)
	②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과실 로 ①항, ②항 죄를 범한 경우	3년 ↓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 벌금)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10년 ↓ 징역 (또는 20만 원 ↓ 벌금)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를 위조 하거나 변조	1년 ↑ 의 유기징역 및 수표금액의 10배 ↓ 벌금 (병과형)

2. 양형기준 설정범위

1) 통화에 관한 죄

▣ 형법 207조 1항(통화위·변조) ⇒ 포함

- 통화에 관한 죄의 기본범죄
-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많다고 볼 수 없으나(분석자료 중 8건), 다른 범죄의 기준이 되므로 양형기준 설정 필요함

▣ 형법 207조 2, 3항(외국통화위·변조) ⇒ 제외

- 분석자료 중 단일범 처벌 사례가 4건¹⁾ 정도 밖에 없고,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처벌 사례 많지 않음
- 국내통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유추하면 되고, 별도 양형기준 설정 실익은 없음

▣ 형법 207조 4항(위·변조통화 등 행사, 행사 목적 수입·수출) ⇒ 포함

- 단일범 처벌 사례는 2건에 불과. 통화위조죄(특가법 10조 포함)와 같이 처벌된 사례는 7건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음
- 판결문검색 결과에 의하면,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음²⁾

1) 분석자료에서는 특가법위반(통화위조) 제10조가 적용된 사안이다.

2)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766 판결

- 통화위조·변조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공문서나 사문서에 관한 범죄에서 위조·변조죄와 행사죄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자체는 설정하되, 위조 등 죄와 같은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타당

- 외국통화에 대한 행사, 수출입은 제외

▣ 형법 208조(위조·변조통화 등 취득) ⇒ 제외

- 분석자료에 처벌 사례 없음
-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단일범으로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외국통화에 대해서만 일부 발견되고 있을 뿐,³⁾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음. 사기죄와의 경합범 가중 처벌에 의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 있음⁴⁾
-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실익은 없음

▣ 형법 210조(위·변조통화등 지정행사) ⇒ 제외

- 분석자료에 1건 있고,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더라도 단일범으로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추가적으로 1건 발견됨⁵⁾
- 법정형이 ‘2년↓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으로, 실무상 대부분 벌금형 처벌되고 있는바, 별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형법 211조 (통화유사물) ⇒ 제외

- 분석자료 및 판결문 검색결과에서 모두 발견되지 아니하며,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2) 유가증권에 관한 죄

▣ 형법 214조 (유가증권 위조·변조) ⇒ 포함

- 유가증권 범죄의 기본 범죄

3)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48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고단10480 판결

4)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737 판결, 2010고단2691 판결

5) 부산지방법원 97고단5595 판결

▣ 형법 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기재) ⇒ 포함

- 유가증권 위조·변조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범죄 위험성에 있어서도 차이 없음
- 위조·변조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단일범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설정 필요함
- 공문서, 사문서에 대한 범죄에서도 자격모용 범행을 유형분류상 위조·변조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

▣ 형법 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 제외

- 분석자료에 사례 전혀 없음

▣ 형법 217조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행사 목적 수입·수출) ⇒ 포함

- 위조 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한다면, 그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같이 의율되는 경향이 있는 위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
- 허위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은 제외

▣ 형법 218조 내지 222조 (인지 등 위조·변조·행사 등) ⇒ 제외

- 분석자료에 사례 없고, 판결문 검색결과도 처벌 사례 거의 없음⁶⁾

3) 부정수표단속범위범죄

▣ 2조 1항(부정수표 발행) ⇒ 포함

- 부수법의 고유한 범죄로,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함

▣ 2조 2항(수표발행 후 부도) ⇒ 포함

- 분석자료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707건 중 564건)

▣ 2조 3항(과실 부정수표 발행 등) ⇒ 제외

6) 다만, 인지위조 등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례로는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6654 인지위조 등 사건이 있고, 인지 등 소인말소죄는 단일범으로 벌금형 처벌 사례들만 있음

- 분석자료에는 1건 있고, 판결문 검색결과 2건의 단일범 처벌 사례가 추가로 발견됨⁷⁾
- 실무상 처벌 사례가 드물고, 법정형도 ‘3년↓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 벌금’ 으로 낮은 편으로, 독립적인 양형기준 설정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조(허위신고) ⇒ 포함

- 부수범이 최초 시행되는 과정에서 결제자금이 없이 수표를 발행한 자가 미결제에 의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 사취, 분실 등의 허위 사유를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예가 많아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수범 2조 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되지도 않고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부수범 제4조가 1966년 개정법에 들어오게 되었음
- 부수범의 고유한 범죄이고, 제2조의 각 범죄보다 법정형이 한층 가중된 범죄로서 별도의 양형기준 설정 필요

■ 제5조(수표 위·변조) ⇒ 포함

- 유가증권위조·변조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 특별법 규정으로 설정의 필요성 있음

나.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1)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18장)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07	① 통화(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무기 또는 2년 ↑ 유기징역 (유기징역시 10년 ↓ 자격정지 또는 2,000만 원 ↓ 벌금 병과가능)
	④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 (행사, 수입, 수출)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단28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824 사건 판결들로, 모두 금고형 선고(그중 2건은 집행유예). 사기죄와 경합범 기소 사례도 있음

2) 유가증권에 관한 죄(형법 제19장)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14	유가증권(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①항),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 또는 변조(②항)	10년 ↓ 징역
§ 21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 기재	
§ 217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214조 내지 215조 기재 유가증권을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수출	10년 ↓ 징역

3) 부정수표단속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2	①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다음 각 호의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1호 - 가공인물 명의 발행/작성 2호 - 수표계약없이 발행,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 3호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	5년 ↓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 벌금)
	②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	10년 ↓ 징역 (또는 20만 원 ↓ 벌금)
§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1년 ↑ 의 유기징역 및 수표금액의 10배 ↓ 벌금 (병과형)

III.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가. 공문서 범죄 양형기준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목적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목적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나.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1)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소극적 동기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적극적 동기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 - 2년6월

3. 통화유가증권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

가. 유형별 분포 및 실행, 집행 비율

단위: 명, %

세부법조 및 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행	집행유예	
부수법(2조1항)	수	5	4	9
	비율	55.6	44.4	100.0
부수법(2조2항)	수	156	408	564
	비율	27.7	72.3	100.0
부수법(4조)	수	9	14	23
	비율	39.1	60.9	100.0
부수법(5조)	수	7	8	15
	비율	46.7	53.3	100.0
위조유가증권행사	수	25	53	78
	비율	32.1	67.9	100.0
유가증권변조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유가증권위조	수	3	2	5
	비율	60.0	40.0	100.0
통화위조	수	3	5	8
	비율	37.5	62.5	100.0
통화위조행사	수	1	3	4
	비율	25.0	75.0	100.0
전체	수	209	498	707
	비율	29.6	70.4	100.0

나. 징역형의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법조 및 죄명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26	30	36		60
부수법 (2조1항)	수	0	1	1	0	2	1	2	0	0	1	0	1	0	0	0	0	0	9
	비율	0.0	11.1	11.1	0.0	22.2	11.1	22.2	0.0	0.0	11.1	0.0	11.1	0.0	0.0	0.0	0.0	0.0	100.0
부수법 (2조2항)	수	2	5	65	4	189	125	67	68	6	0	1	21	9	0	1	1	0	564
	비율	0.4	0.9	11.5	0.7	33.5	22.2	11.9	12.1	1.1	0.0	0.2	3.7	1.6	0.0	0.2	0.2	0.0	100.0
부수법 (4조)	수	0	0	6	1	10	3	0	1	0	0	0	1	1	0	0	0	0	23
	비율	0.0	0.0	26.1	4.3	43.5	13.0	0.0	4.3	0.0	0.0	0.0	4.3	4.3	0.0	0.0	0.0	0.0	100.0
부수법 (5조)	수	0	0	0	0	4	2	1	4	0	0	0	2	1	0	0	1	0	15
	비율	0.0	0.0	0.0	0.0	26.7	13.3	6.7	26.7	0.0	0.0	0.0	13.3	6.7	0.0	0.0	6.7	0.0	100.0
위조유가 증권행사	수	1	1	12	0	19	17	9	14	0	0	0	3	1	1	0	0	0	78
	비율	1.3	1.3	15.4	0.0	24.4	21.8	11.5	17.9	0.0	0.0	0.0	3.8	1.3	1.3	0.0	0.0	0.0	100.0
유가증권 변조	수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유가증권 위조	수	0	0	0	0	3	0	0	2	0	0	0	0	0	0	0	0	0	5
	비율	0.0	0.0	0.0	0.0	60.0	0.0	0.0	4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통화위조	수	0	0	0	0	0	0	0	0	0	0	0	2	0	0	4	1	1	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50.0	12.5	12.5	100.0
통화위조 행사	수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2	0	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25.0	50.0	0.0	100.0
전체	수	3	7	84	5	228	148	79	89	6	1	1	31	12	1	6	5	1	707
	비율	0.4	1.0	11.9	0.7	32.2	20.9	11.2	12.6	0.8	0.1	0.1	4.4	1.7	0.1	0.8	0.7	0.1	100.0

다. 분석자료에 따른 금액별 형량분포⁸⁾

1) 통화에 관한 범죄

▣ 통화위조 등

단위: 명, %

위·변조 액수		형량(월)				전체
		18	30	36	60	
5천만 원 미만	수	2	3	0	0	5
	비율	40.0	60.0	0.0	0.0	100.0

8) 분석자료에는 일부 판결이 누락되거나, 다른 범죄와 경합범 가중된 형량을 단일범 형량으로 잘못 파악한 오류, 금액 오기 등이 몇 군데 발견되나, 여기서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하여 그대로 옮겨 놓았음

단위: 명, %

위·변조 액수		형량(월)				전체
		18	30	36	60	
20억 원 이상	수	0	1	1	1	3
	비율	0.0	33.3	33.3	33.3	100.0
전체	수	2	4	1	1	8
	비율	25.0	50.0	12.5	12.5	100.0

▣ 위조 등 통화행사

단위: 명, %

위·변조 액수		형량(월)			전체
		18	30	36	
5천만 원 미만	수	1	1	1	3
	비율	33.3	33.3	33.3	100.0
20억 원 이상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전체	수	1	1	2	4
	비율	25.0	25.0	50.0	100.0

2)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

▣ 유가증권 위조

단위: 명, %

위·변조 유가증권 액수		형량(월)		전체
		6	12	
5천만 원 미만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1억5천만 원 미만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5억 원 미만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20억 원 이상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3	2	5
	비율	60.0	40.0	100.0

▣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단위: 명, %

위·변조 유가증권 액수		형량(월)			전체
		3	6	8	
5천만 원 미만	수	1	1	0	2
	비율	50.0	50.0	0.0	100.0
1억 원 미만	수	0	0	1	1
	비율	0.0	0.0	100.0	100.0
2억 원 미만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1	2	1	4
	비율	25.0	50.0	25.0	100.0

3) 부정수표단속범위반

▣ 부수법 2조 1항 (부정수표 발행)

단위: 명, %

부정수표 발행 총액		형량(월)							전체
		3	4	6	8	10	15	18	
5천만 원 미만	수	0	0	0	1	0	0	0	1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억 원 미만	수	0	1	0	0	0	0	0	1
	비율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억5천만 원 미만	수	1	0	0	0	0	0	0	1
	비율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억 원 미만	수	0	0	2	0	1	0	0	3
	비율	0.0	0.0	66.7	0.0	33.3	0.0	0.0	100.0
2억5천만 원 미만	수	0	0	0	0	1	0	0	1
	비율	0.0	0.0	0.0	0.0	100.0	0.0	0.0	100.0
5억 원 미만	수	0	0	0	0	0	0	1	1
	비율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억 원 미만	수	0	0	0	0	0	1	0	1
	비율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전체	수	1	1	2	1	2	1	1	9
	비율	11.1	11.1	22.2	11.1	22.2	11.1	11.1	100.0

▣ 부수법 2조 2항 (수표발행 후 부도)

단위: 명, %

부정수표 발행 총액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5천만 원 미만	수	0	3	30	3	31	2	1	2	0	0	0	0	0	0	72
	비율	0.0	4.2	41.7	4.2	43.1	2.8	1.4	2.8	0.0	0.0	0.0	0.0	0.0	0.0	100.0
1억 원 미만	수	1	1	16	0	82	30	9	4	0	0	1	0	0	0	144
	비율	0.7	0.7	11.1	0.0	56.9	20.8	6.3	2.8	0.0	0.0	0.7	0.0	0.0	0.0	100.0
1억5천만 원 미만	수	1	1	7	0	27	29	8	10	0	0	0	0	0	0	83
	비율	1.2	1.2	8.4	0.0	32.5	34.9	9.6	12.0	0.0	0.0	0.0	0.0	0.0	0.0	100.0
2억 원 미만	수	0	0	5	0	12	19	10	4	0	0	0	0	0	0	50
	비율	0.0	0.0	10.0	0.0	24.0	38.0	20.0	8.0	0.0	0.0	0.0	0.0	0.0	0.0	100.0
2억5천만 원 미만	수	0	0	2	0	10	5	10	5	0	0	1	1	0	0	34
	비율	0.0	0.0	5.9	0.0	29.4	14.7	29.4	14.7	0.0	0.0	2.9	2.9	0.0	0.0	100.0
3억 원 미만	수	0	0	2	0	4	6	8	7	0	0	0	0	0	0	27
	비율	0.0	0.0	7.4	0.0	14.8	22.2	29.6	25.9	0.0	0.0	0.0	0.0	0.0	0.0	100.0
5억 원 미만	수	0	0	1	0	11	15	8	12	1	0	6	1	0	0	55
	비율	0.0	0.0	1.8	0.0	20.0	27.3	14.5	21.8	1.8	0.0	10.9	1.8	0.0	0.0	100.0
10억 원 미만	수	0	0	2	1	6	13	9	11	3	0	8	1	0	0	54
	비율	0.0	0.0	3.7	1.9	11.1	24.1	16.7	20.4	5.6	0.0	14.8	1.9	0.0	0.0	100.0
20억 원 미만	수	0	0	0	0	2	4	4	8	2	1	3	4	0	0	28
	비율	0.0	0.0	0.0	0.0	7.1	14.3	14.3	28.6	7.1	3.6	10.7	14.3	0.0	0.0	100.0
20억 원 이상	수	0	0	0	0	4	2	0	5	0	0	2	2	1	1	17
	비율	0.0	0.0	0.0	0.0	23.5	11.8	0.0	29.4	0.0	0.0	11.8	11.8	5.9	5.9	100.0
전체	수	2	5	65	4	189	125	67	68	6	1	21	9	1	1	564
	비율	0.4	0.9	11.5	0.7	33.5	22.2	11.9	12.1	1.1	0.2	3.7	1.6	0.2	0.2	100.0

▣ 부수법 4조 (허위신고)

단위: 명, %

허위신고 수표 발행 총액		형량(월)							전체
		4	5	6	8	12	18	24	
5천만 원 미만	수	4	1	4	0	1	1	0	11
	비율	36.4	9.1	36.4	0.0	9.1	9.1	0.0	100.0
1억 원 미만	수	0	0	2	1	0	0	0	3
	비율	0.0	0.0	66.7	33.3	0.0	0.0	0.0	100.0
1억5천만 원	수	1	0	0	0	0	0	0	1

단위: 명, %

허위신고 수표 발행 총액		형량(월)							전체
		4	5	6	8	12	18	24	
미만	비율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억 원 미만	수	0	0	1	0	0	0	0	1
	비율	0.0	0.0	100.0	0.0	0.0	0.0	0.0	100.0
2억5천만 원 미만	수	1	0	1	1	0	0	0	3
	비율	33.3	0.0	33.3	33.3	0.0	0.0	0.0	100.0
3억 원 미만	수	0	0	1	0	0	0	1	2
	비율	0.0	0.0	50.0	0.0	0.0	0.0	50.0	100.0
5억 원 미만	수	0	0	0	1	0	0	0	1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억 원 미만	수	0	0	1	0	0	0	0	1
	비율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전체	수	6	1	10	3	1	1	1	23
	비율	26.1	4.3	43.5	13.0	4.3	4.3	4.3	100.0

■ 부수법 5조 (수표위조·변조)

단위: 명, %

위·변조 유가증권 액수		형량(월)							전체
		6	8	10	12	18	24	36	
5천만 원 미만	수	2	0	1	0	1	0	1	5
	비율	40.0	0.0	20.0	0.0	20.0	0.0	20.0	100.0
1억 원 미만	수	0	1	0	0	0	0	0	1
	비율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억5천만 원 미만	수	0	1	0	0	0	0	0	1
	비율	0.0	100.0	0.0	0.0	0.0	0.0	0.0	100.0
2억5천만 원 미만	수	1	0	0	0	0	0	0	1
	비율	100.0	0.0	0.0	0.0	0.0	0.0	0.0	100.0
5억 원 미만	수	0	0	0	2	0	0	0	2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0억 원 이상	수	0	0	0	2	1	1	0	4
	비율	0.0	0.0	0.0	50.0	25.0	25.0	0.0	100.0
전체	수	3	2	1	4	2	1	1	14
	비율	21.4	14.3	7.1	28.6	14.3	7.1	7.1	100.0

4. 대유형 분류

1) 통화 / 유가증권 / 부수범위반 대유형 분리 여부 검토 - 0

- 먼저, 통화에 관한 범죄와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는 법정형이나 법적 성격, 양형인자의 차이가 커서 대유형으로 분리함
- 다음으로, 유가증권에 관한 범죄와 부수범위반죄는 일부 중복되는 범죄유형(위조·변조죄)이 있으나, 부수범 고유의 범죄가 다수 있으므로 유형을 분리함
- 다만, 유가증권 위조·변조죄와 부수범상 수표위조·변조죄는 그 본질이 동일하고 실무상 그 취급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두 죄를 동일한 대유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2) 결론 - 대유형 분류

- ① 통화 위·변조 등
- ②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 ③ 부정수표 발행 등

5. 통화 위·변조 등 ➡ 중·소유형 분류

가. 위조·변조 / 행사 등 범죄의 유형 분리 여부 검토 - ×

- ‘위조·변조’와 ‘동행사’의 두 유형의 범죄는 법정형이 서로 동일하고, 실무상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
- 두 범죄의 양형인자가 상당 부분 중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형량분포에 있어서 위조 등 금액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문서, 사문서에 대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형 설정 가능

나. 액면금액별 분류 검토 - ×

- ▣ 위조 등 통화의 액면금액이 절대적인 양형인자로 파악하기 어려움.
분석대상 판결문 사례 일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음

사건번호	범행내용	선고형
서울중앙 2015재고합2	5만 원권 1장 위조 및 행사	징역 5년
서울동부 2014고합389	1만 원권 등 총 18만 원 상당 위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 2012고합976	5만 원권 1장 위조 및 행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부천지원 2012고합440	1만 원권 19,301장 (1억 9,301만 원 상당)	징역 5년
평택지원 2013고합145	미화 100달러 4,300장 (원화 4억 5,000만 원 상당)	징역 3년

6. 유가증권, 수표 위·변조 등 ◀ 중·소유형 분류

가. 쟁점별 검토

1) 형법 214조 / 215조 / 217조 유형 분류 - ×

- ▣ 위 각 범죄는 법정형이 10년↓ 징역형으로 모두 동일하고, 양형인자가 대부분 중복됨
- ▣ 공문서, 사문서에 대한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형을 분리하기 보다는,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2) 유가증권 vs 수표 분류 - ○

- ▣ 유가증권 위·변조 등은 10↓, 부수법상 수표 위·변조는 1년↑ ▶ 법정형의 차이가 큼

3) 액면금액별 분류 - X

-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조 등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절대적인 양형인자로 파악하기 어려움. 한편, 분석대상 판결문에 의할 때 위조 등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액면금액 또는 행사금액과 형량범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음

액면금액 총액	형량범위
5,000만 원 미만	징역 3월 ~ 징역 3년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20억 원 이상	징역 4월 ~ 징역 2년

- 위조 등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결정적인 양형인자로 보이지는 아니함
- 오히려 통화에 대한 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범행방법 등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듯함

7. 부정수표발행 등 ㉠ 중·소유형 분류

가. 부수법 2조 1항 / 2항 / 4조의 중·소유형 분리 여부 검토

- 위 각 범죄는 법정형이 서로 같고, 범죄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통계상 과거 형량분포도 유사함
- 부수법 2조 1항의 경우, 같은 조 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임
㉠ 이 부분 차이가 있으나 양형인자 반영으로 차별화가 가능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항은 공유 가능
- 따라서 중유형(별개의 양형인자표 적용)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고, 소

유형으로만 분류함

나. 부수법 2조 1, 2항을 부정수표 금액 내지 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할지 여부 - ×

- ▣ 통계상 부도금액과 형기 증가의 대체적인 경향성은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임에도 중한 형이 선고되거나, 다액임에도 경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부도수표 총액	형량평균(징역, 월)	중간값 위치
5천만 원 미만	5.28	6월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6.65	6월
1억 원 이상 ~ 1억5천만 원 미만	7.55	8월
1억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7.84	8월
2억 원 이상 ~ 2억5천만 원 미만	9.12	10월
2억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9.04	10월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0.18	10월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10.83	10월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13.36	12월
20억 원 이상	14.71	12월
전체	8.30	8월

- ▣ 발행기간, 발행경위, 부도경위 및 회수율 등의 다른 사정도 양형에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도금액이 결정적인 양형요소라고 보기 어려움
- ▣ 범죄의 특성상⁹⁾ ① 수표가 발행되었지만 고소 단계에서부터 제외되는 경우, ②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③ 재판 계속 중에 공소기각 결정¹⁰⁾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공소기각 부분이 판결문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회수된 수표액 및 이를 포함한 부도 총액이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 등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9)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다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10)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많음

- 따라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① 발행 되었다가 미지급된 전체 부도 금액, ② 기소된 부도 금액, ③ 판결 선고 당시의 부도 금액(유죄로 인정된 부도 금액) 중 어느 어느 시점의 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됨¹¹⁾
- 양형이유에 회수율이 설시되는 경우도 보이나, 회수율은 전체 미지급된 수표 중에 회수된 수표의 비율로서 회수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지급된 전체 부도 금액’ 을 알아야 함
- 따라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뒤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양형인자(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반영함

8. 최종 유형분류

1. 통화 위·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2. 유가증권, 수표 위·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변조, 행사			
2	수표 위조변조			

11) 발행 되었다가 미지급된 전체 부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수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다액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은 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공소 기각되어 엄밀하게는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기소된 부도 금액 및 유죄로 인정된 부도 금액의 경우 회수율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다액인지 여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기 어려움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3억 2천만 원인 경우에도 23억 원에 대하여 기소가 되었다가 20억 원 상당이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2084 판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그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부도금액이 ‘다액’이라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바 ‘다액’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일정하지 않게 됨]

3.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작성, 수표 부도			
2	허위 신고			

IV. 형량범위 검토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

▣ 법정형 및 행위 유형이 유사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2. 통화 위·변조 등 형량범위 검토

가. 양형자료 조사 결과

단위: 명, %

세부법조 및 죄명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26	30	36		60
통화위조	수	0	0	0	0	0	0	0	0	0	0	0	2	0	0	4	1	1	8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50.0	12.5	12.5	100.0
통화위조 행사	수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2	0	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0.0	0.0	25.0	50.0	0.0	100.0

나. 형량범위 제안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 6월	1년 6월 - 3년	2년 6월 - 6년

- ▣ 가중영역의 상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고형량 범위는 법정형이 동일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와 동일하게 정함
- ▣ 가중영역의 상한의 경우, 과거 징역 60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6년으로 상향 조정함

3.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형량범위 검토

가. 양형자료 조사 결과

1) 형법상 유가증권 위·변조 및 행사

죄명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26	30	36		60
유가증권 위조	수	0	0	0	0	1	0	0	3	0	0	0	0	0	0	0	0	0	4
	비율	0	0	0	0	25	0	0	75	0	0	0	0	0	0	0	0	0	100.0
유가증권 변조	수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비율	0	0	0	0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00.0
위조유가 증권행사	수	1	2	14	0	21	17	11	14	0	0	0	3	1	1	0	0	0	85
	비율	1.1	2.3	16.4	0	24.7	20	12.9	16.4	0	0	0	3.5	1.1	1.1	0	0	0	100.0
전체	수	1	2	14	0	24	17	11	17	0	0	0	3	1	1	0	0	0	91
	비율	1.0	2.1	15.3	0	26.3	19.6	12.0	19.6	0	0	0	3.2	1.0	1.0	0	0	0	100.0

2) 수표 위·변조 및 행사

단위: 명, %

세부법조 및 죄명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26	30	36		60
부수법 (5조)	수	0	0	0	0	4	2	1	4	0	0	0	2	1	0	0	1	0	15
	비율	0.0	0.0	0.0	0.0	26.7	13.3	6.7	26.7	0.0	0.0	0.0	13.3	6.7	0.0	0.0	6.7	0.0	100.0

나. 형량범위 제안

1) 형법상 유가증권 위·변조 및 행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변조 및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 ▣ 법정형이 동일한 공문서위조·변조죄,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기본으로 참고함
- ▣ 기본영역 하한을 8월로 정할 경우 ‘6월 이하’의 44.7% 비율의 범위를 기본영역에 포섭하지 못하게 되어 감경·기본·가중 영역 사의의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6월로 정함
- ▣ 가중영역의 하한을 1년 6월로 정할 경우 가중영역에 포섭되는 비율(4건, 5.2%)이 지나치게 적음 ⇒ 1년으로 조정

2) 수표 위·변조 및 행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수표 위조·변조 및 행사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 ▣ 법정형이 동일한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를 기본으로 참고함
- ▣ 다만, ① 감경영역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② 1유형과의 형량분포 차이와 법정형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영역의 하한을 10월로, ③ 가중영역의 경우 과거 선고형 중 가장 높은 형이 3년인 점을 고려하되 규범적 조정을 거쳐 상한을 4년으로 각 상향 조정함

4. 부정수표 발행 등 형량범위 검토

가. 양형자료 조사 결과

나. 형량범위 제안

단위: 명, %

세부법조 및 죄명		형량(월)																	전체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26	30	36	60	
부수법 (2조1항)	수	0	1	1	0	2	1	2	0	0	1	0	1	0	0	0	0	0	9
	비율	0.0	11.1	11.1	0.0	22.2	11.1	22.2	0.0	0.0	11.1	0.0	11.1	0.0	0.0	0.0	0.0	0.0	100.0
부수법 (2조2항)	수	2	5	65	4	189	125	67	68	6	0	1	21	9	0	1	1	0	564
	비율	0.4	0.9	11.5	0.7	33.5	22.2	11.9	12.1	1.1	0.0	0.2	3.7	1.6	0.0	0.2	0.2	0.0	100.0
부수법 (4조)	수	0	0	6	1	10	3	0	1	0	0	0	1	1	0	0	0	0	23
	비율	0.0	0.0	26.1	4.3	43.5	13.0	0.0	4.3	0.0	0.0	0.0	4.3	4.3	0.0	0.0	0.0	0.0	100.0

1) 부정수표 발행·작성, 수표 부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작성, 수표 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 법정형이 동일한 사문서위조·변조죄를 기준으로 함
- 과거 양형실무의 형량분포가 가장 많은 6월, 8월(수표 부도를 기준으로 55.7%)을 기본영역에 포섭함

2) 허위 신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일반 무고죄를 기준으로 함
- 평균형량이나 형량분포에서 ‘수표발행 후 부도’ 보다 가볍게 처벌되고 있지만, ① 5년간 사건 수가 23건에 불과하여 통계의 의미가 크지 않은 점, ② 법정형이 10년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규범적으로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4년으로 정함

5. 최종 권고 형량범위

1. 통화 위·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2.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변조 및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수표 위조·변조 및 행사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3.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작성, 수표 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 판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형인자를 추출함
- ▣ 행위태양이 유사한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을 주로 참조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가. 「1. 통화 위·변조 등」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1)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범죄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 참고
- 문서범죄와 달리 달성하려는 목적이 경제적 측면으로 귀결되는 점을 참고하여 양형인자의 표현 및 정의를 규정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경우
 -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

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말한다.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문서 범죄 또는 대부분의 범죄군의 양형인자 참고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3) 일반감경인자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4) 일반가중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통화 위·변조 등이 이득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고려함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

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나. 「2.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법, 알선책 등에게

양 형 인 자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대부분 통화 위·변조 유형과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공통되지 않는 인자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검토함

1) 특별감경인자

-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분석 자료 총 108건 중 11건에서 ‘공탁’,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변제’, ‘보증권을 초과하여 위조한 사안에서 어음 상대방과 합의’,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교부한 사안에서 배서인의 처벌불원’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는 다소 범주가 다름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양형인자의 정의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일반감경인자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일반감경인자 참고
-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에 있어서는 발행일자, 지급기일, 발행인 등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조·변조가 가능함

다. 「3. 부정수표 발행 등」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범죄로 인한 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름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1) 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감경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지적재산권, 방화, 권리행사방해, 손괴범죄 특별감경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허위신고 유형에서 허위신고 후 수표가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음
-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분석 자료 총 834건 중 268건에서 ‘회수’, ‘공탁’, ‘피해 변제’, ‘수표소지인 처벌 불원’, ‘회수 노력’, ‘피해회복 노력’, ‘회수
-

가능성’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나타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 작성 및 허위신고)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분석 자료에서 ‘단기간에 집중 발행 후 부도’, ‘단기간에 거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발행 후 부도’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실시함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기준에도 ‘악의적인 미지급’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횡령·배임, 사기, 지식재산권, 공갈, 방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등 특별가중인자 참고
 - 수표소지인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동일한 부도 금액에 따른 피해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결과 불법을 포함할 수 있는 양형인자로 설정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3) 일반감경인자

-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표부도)
 - 지급의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분석사례들이 있음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기준인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부정수표단속범위범죄에도 적용 가능함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일반가중인자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이득죄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범죄수익의 취득여부를 중요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 범행 후 도피

- 분석 자료에서 수표 부도의 경우 ‘도주’, ‘해외 도피한 경우’를 불리한 양형인자로 실시한 사례가 많음(22건)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VI. 집행유예 기준

1. 통화 위·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

2.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부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 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일부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